◉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-187호

광주·전남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

「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자체와 협의한 후 제18차 에너지위원회(2019년 11월 6일)의 심의를 거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.

2019년 11월 18일

산업통상자원부장관

1.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명칭·위치 및 면적

○ 명칭 : 광주·전남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

○ 위치 : 광주·전남 혁신도시(나주), 광주·전남(나주, 장성, 목포) 일원

○ 면적 : 18.92km2

구분	유형		지정면적
코어지구	광주	남구 도시첨단산단	0.23㎢
		에너지밸리 일반산단	0.35㎢
		광주 평동일반산단 1,2,3차	4.00㎢
	전남	광주·전남 빛가람 혁신도시	1.80㎢
		나주 에너지국가산단(예정)	1.72㎢
		나주 일반산단	0.40㎢
		나주 신도일반산단	0.23㎢
		나주 혁신일반산단	1.20㎢
		한전공대 연구클러스터(예정)	0.80㎢
연계지구	연계1	장성 나노기술일반산단	0.48㎢
		광주 첨단 과학산단(1~3단계)	3.69㎢
		빛그린 국가산단(광주·전남)	2.68㎢
	연계2	목포 대양일반산단	0.85㎢
		목포신항 배후단지	0.49㎢
면적 합계			18.92㎢

2.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목적 및 지정일

○ 지정목적 : 광주·전남을 에너지신산업의 융복합 거점으로 육성

○ 지정일 : 2019년 11월 15일

3.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방법 및 조성기간 등 주요내용

○ 조성방법 : 에너지밸리 지역 인프라를 활용하고, 발전공기업의 수요를 연계한 기업유치를 통해 자생적 에너지신산업 융복합단지 조성

○ 조성기간 : 2019년 ~ 2024년

◉국토교통부고시제2019-613호

분양대행자 사전교육기관 지정

「주택법」 제54조의2 및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양대행자 사전교육기관을 지정·고시합니다.

2019년 11월 18일

국토교통부장관

□ 지정 기관

기관명	대표자	기관 소재지	교육장소	연락처
한국주택협회	김대철	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4층	·건설회관 회의실 (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, 건설회관 4층) 등	02-6900-9014
대한주택건설협회	심광일	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25 주택건설회관	·(서울) 서울여성플라자 (동작구 여의대방로길 54길 18, 3층) ·(지방) 추후 홈페이지 공지	02-785-0913, 0915

*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는 '20년 교육인원 및 '21년 교육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, '20.12월말 추가지정 여부를 결정

◉국토교통부고시제2019-633호

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(영덕영해지구)

『공공주택 특별법』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덕영해 공공실버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9년 11월 18일

국토교통부장관

1. 사 업 명 : 영덕영해지구 공공실버주택건설사업(영구임대)
2. 사업시행자
   ○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: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
   ○ 주 소 :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
3. 사업개요

구 분	기 정	변 경	비 고
가. 대지위치	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성내리 산 41-5번지 외2필지	좌 동	
나. 사업면적(㎡)	4,991.10	6,109.90	
다. 대지면적(㎡)	4,991.10	6,109.90	증 1,118.80
라. 연 면 적(㎡)	3,403.45	6,187.60	증 2,784.15
마. 사업규모	아파트 2개동(영구임대 52세대, 4층) 및 실버복지관	아파트 3개동(영구임대 124세대, 4층) 및 실버복지관	증 72세대
바. 구 조	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	좌 동	
사. 사업기간	2017. 12. ~ 2020. 05.	2017. 12. ~ 2021. 07.	증 14개월

4. 사 업 비 : (기정) 8,235,017천원
   (변경) 16,691,395천원
5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·지번·면적·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·주소 등을 기재한 서류 : [붙임1]
6.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
   가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고시 : [붙임2], [붙임3]
   나.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: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(http://luris.molit.go.kr)에서 열람할 수 있음